



경찰청

보도자료

대한민국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5. 3. 20.(목) 조간 온라인·방송 2025. 3. 19.(수) 12:00

경찰청,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3월 20일부터 시행

-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 의식 강화 및 책임 의식 제고
- 도로교통법 개정 통해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조항 신설,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

경찰청(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)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게 ‘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※ 도로교통법 제56조의 3 신설(2024. 3. 19. 공포, 2025. 3. 20. 시행)

제56조의3(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 ①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(이하 “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”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,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*는 차량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의무교육은 없었다.

* 「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」(국토교통부 고시) 제2조 8호

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,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전과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.

※ 다만,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는 시행 6개월 이내

(2025년 9월 19일까지)에 교육을 받아야 함 <위반 시 처벌 규정 과태료 8만 원>

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총 3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하며, 교육 내용으로는 △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△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△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△그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.

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(치안감 한창훈)은 “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짐에 따라,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,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”라며, “이번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,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.”라고 강조했다.

경찰청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통 법규 및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	책임자	총경	유동배 (02-3150-2052)
		담당자	경정	전영식 (02-3150-2751)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
광공누리 공공저작을 자유로이 이용

□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시범운행지구 현황

-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현황: 476대(2025. 3. 기준)
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* 현황: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및 17개 시·도 총 42곳(2025. 3. 기준)
- * 실제 도심에서 자율차의 연구·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, 유상 여객·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('20. 11.~)

□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개요

- (대상자)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려는 사람
 - ※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·개발 및 서비스(버스, 화물) 운영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
- (교육 구성)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성
 - <신규 안전교육>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(총 3시간)
 - ※ 현재,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('25.9. 19.)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
 - <정기 안전교육>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(총 3시간)
 - ※ 직전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함
- (교육 방법) 한국도로교통공단 「교통안전 교육센터*」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
 - * 「교통안전 교육센터」: trafficedu.koroad.or.kr
 - <수료 기준> 학습진도율(100%) + 최종평가(60점 이상) 필수
- (교육 비용) 24,000원
- (별칭 규정)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8만 원(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)